

# [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용(대관) 약관]

개정 2015.12.31. 체육사업팀-8369(2015.12.31.)

개정 2021.12.01. 문화체육팀-4112(2021.11.25.)

개정 2023.11.01. 문화체육팀-6669(2023.10.04.)

## 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함.)과 시설사용(대관)자(이하“사용자”라 함.)간의 시설사용(대관)과 관련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사용허가 및 자격)

1. 공단에 시설사용신청 후 허가되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사용자격이 있다.
2. 시설사용은 관악구민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공단 임의로 기타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.

## 제3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1. 공단은 시설사용자가 2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 한다.
  - ①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
  - ②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악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  - ③국가, 서울시, 관악구의 행사는 개시일 30일전, 기타 신청은 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통보를 받은 후 사용개시 5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<2009.1.13개정>

## 제4조(운영[사용]시간)

1. 시설의 일일 운영(사용)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특별한 사유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공단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- ①운영시간 : 월-토 06:00-23:00 / 일요일 09:00-17:00
  - ②휴장일 : 매월 첫째주 일요일 / 공휴일
2.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, 개방하고자 하는 시간에 체육 및 교육문화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  - ①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
  - ②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악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
## 제5조(준수사항 및 사용제한)

1.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- ①허가된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사용시설을 보호 및 보전하여야 한다.
  - ②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다.
  - ③사용자 인채물은 시설 사용허가 후 제작하여야 한다.
  - ④주차장 시설 이용 시 대관승인차량(최대 5대)은 대관 시간 내(內) 무료주차를 하며 그 외에 차량은 주차장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.
  - ⑤시설사용 후 모든 사용시설 및 시설물을 사용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⑥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및 음식물 등을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.
2.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- ①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
  - ②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
  - ③기타 영리행위(종교활동, 판매행위, 광고행위 유료강습)등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행사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④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⑤체육시설의 훼손과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- ⑥장내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
  - ⑦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
  - ⑧회원 상호간 법적인 다툼이 있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- 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  - ⑩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- 또한, 2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(단체)는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
- ⑪ 인터넷을 통한 시설사용예약이 자동예약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부정예약으로 판단될 경우
  - ⑫ 사용자가 공단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  - 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**제6조(사용료)**

1.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.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다음과 같다.

구 분	체육경기	체육경기 이외 행사	비 고
체육관(대체육관)	80,000원	240,000원	평일 주간 기준
강당, 소체육관, 에어로빅장, 생활체육실 등	40,000원	120,000원	
비 고	1. 기본전용 사용시간 : 2시간 기준 2. 기본전용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시간 추가 시 마다 기본사용료의 50%(평일 주간 기준 30,000원)를 부과하고,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 3. 토.일.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,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할을 가산함. (주간 06:00-18:00, 야간 18:00-23:00) 4. 부가세 별도 1)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 행사 ○ 체육경기 - 대관시설에서 30명 미만의 인원이 이용가능한 단일종목의 체육활동 - 구청장기 · 구연합회장기 · 구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 ○ 체육경기 이외 행사 - 3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복합 활동(체육경기 포함) - 체육대회, 단합대회, 경기대회, 기념행사, 발표회, 레크레이션 등 - 생활체육회 및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		

	<p>2) 영리단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이용시 요금징수(입장·강습·관람) 및 판매, 촬영 등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(개인 포함)나 단체(기업 포함)에 대하여 30% 할증</li> </ul> <p>3) 단체 할인시 할인대상 여부에 대한 증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는 구청 관할 부서의 협조 공문으로 증명 (30명 이상의 명단 포함)</li> </ul>
--	---

2. 사용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, 시설사용 허가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(사용허가 후 납부기한 통보)
3.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사용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7조(환급 및 연기)**

1. 공단 귀책사유나 재난.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급
  - 2)회원 귀책사유(이사, 질병, 장기출장. 기타 개인사유 등)에 의한 환급 시
    - ①사용개시 5일 이전 취소 : 전액 환급
    - ②사용개시 전 : 10%공제 후 환급(단, 전용사용 허가 시 사용료의 50%공제 후 환급)
    - ③사용개시 이후 : 사용료 환급 불가
2. 공단 귀책사유나 재난.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일시 정지 시 연기 가능하다 단,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연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환급 한다.
3.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.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[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)]에 따른다.

**제8조(책임소지)**

1.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사용단체 및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2.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(물)의 훼손 및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3.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나 규정에 따른다.

**제9조(기타)**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 이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